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구 미 시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9.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에 따라 구미시는 중소기업 5G 융합제품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시장진출을 위하여 이동통신사의 5G 상용망과 동일 수준의 시험망을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융합기술연구본부에 구축하여 중소기업에게 개방형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자 함.

나.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0회계연도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2) 대 표 : 장세용

(3)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4) 출연예정액 : 금2,300,000천원(도비 690,000천원, 시비 1,610,000천원)

※ 2차년도(' 20. 1월 ~ ' 20. 12월) 소요예산 중 지방비 매칭 금액

나. 주요 사업

(1) 사 업 명 : 5G 시험망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 사업기간 : 2019년 5월 ~ 2023년 12월 (5년간)

(3) 사업위치 : 구미대로 350-27 (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

(4) 총사업비 : 198억원 [국비128, 도비21, 시비49]

- 연도별 소요예산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계	198	9	60.6	66.8	35.6	26
국 비	128	4	37.6	52.8	21.6	12
도 비	21	1.5	6.9	4.2	4.2	4.2
시 비	49	3.5	16.1	9.8	9.8	9.8

(5) 추진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상북도, 구미시

(6) 주관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7) 사업내용

- 이동통신사의 5G 상용망과 동일 수준의 시험망을 구축하여

5G 융합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에게 망 연동시험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여 제품 경쟁력 확보

- 초고속·대용량 서비스 시험지원

- 저지연·초연결 서비스 시험지원
- 5G 시험 지원 서비스 고도화

(8)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2016. 12 : 경북 대선공약 제안, 미래부 5G발전전략 반영
- 2017. 3 : 경북 대선공약사업 반영
- 2018. 3 : '19년 신규사업(균형발전특별회계) 제출
- 2018. 12 : '19년 국비사업 반영
- 2019. 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공고
- 2019. 5 : 수행기관 선정 평가 및 사업선정
- 2019. 6 : 사업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2019. 12 : 4G-5G 연동시스템 구축
- 2020. 12 : 4G 코어업그레이드, 5G 액세스 구축

다. 출연의 필요성

- (1) 글로벌 수준의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의 융합제품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
- (2) 자본력이 부족하여 자체 5G 테스트베드 구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개방형 테스트베드 시험환경을 제공함으로써 5G 융합제품 신규 개발을 촉진하고 타 지역대비 5G산업시장 선도
- (3) 5G 융합서비스 적용으로 경북의 노후 산업단지 스마트화 및 구미 지역 산업·경제 재생, 재도약의 기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
-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
- (3)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4조, 제22조
- (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1조
-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6)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4조(정보통신기술등의 인증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업,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이 새로 개발한 정보통신기술등이 신속하게 그 성능을 인증받아 국내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조사·통계
2. 정보통신기술의 개발
3. 전문인력의 양성
4.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의 조사·연구
5. 정보통신표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6.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내용물의 개발 지원
7.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각종 정보의 제공 및 정보 유통체계의 구축
8.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대외 협력
9. 정보통신기업에 대한 창업·법률·회계·경영 등에 대한 지원
10. 정보통신기술등의 유통구조 개선 및 보급 촉진
11.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업과 해외시장 진출 등) ① 과학기술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창

업과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국내외 현지 창업 및 해외진출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자금,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에 대한 법률·경영·세무 등의 상담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이 개발한 기술의 해외 홍보, 구매자 정보 제공 및 판매의 중개·알선
6.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중소기업 및 벤처 등의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해외시장 정보의 제공 및 투자유치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기업 및 벤처 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진출거점의 구축 및 운영
9. 정보통신융합등 벤처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10. 그 밖에 창업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1조(국제협력 및 글로벌협의체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인력의 해외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 지원
3.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5. 정보통신융합등 관련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해외 전문가로 구성되는 글로벌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글로벌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재원의 조달)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보조할 수 있다.

소관 실·과		신산업정책과
입 안 자	과 장	지영목
	담 당	채창수
	담 당 자	이선영 (480-6173)